

# 해외건설현장 인력고용 확인 안내

## 1. 해외건설현장 인력고용 가산제 개요

### ※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1 및 별표2

국내인력을 해외건설현장에 고용한 해외건설업자에 대해 고용인원의 규모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지 신인도평가액을 가산함

## 2. 해외건설현장 인력고용 확인서 발급

- 대상업체 : 해외건설업자로서 해외건설현장에 국내인력을 고용한자
- 확인대상 : 실적신고 대상년도에 최소 3개월 이상 해외건설현장에 근무한 국내인력으로 해당 업체가 고용하여 직접 인건비를 지급한 인력
- 확인서 발급신청
  - 해외건설 e정보시스템(<http://yes.icak.or.kr>) → 기성실적신고/증명 발급 → 인력고용확인서 발급
- 제출서류
  - 확인대상자에 대한 재직증명서 또는 고용계약서
  - 확인대상자의 출입국사실증명서(출입국관리사무소 발급)
  - 발주처(또는 감리자)가 확인한 현장인력 확인서
- 관련문의 : 해외건설협회 회원지원팀 (Tel. 02-3406-1059)

### 3. (참고) 신인도평가액 가산 범위

고용인원 규모	가 산 금 액
1명 이상 ~ 50명 미만	최근 3년간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1.0
50명 이상 ~ 500명 미만	최근 3년간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1.5
500명 이상	최근 3년간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2.0

※ 중소기업(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)의 경우는 가산금액의 2배 반영(다만, 최근 3년간 연차별가중평균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하지 못함)

※ 고용인원 규모는 실적신고 대상년도에 최소 3개월 이상 해외건설현장에 체류한 국내인력을 1인으로 산정하되, 해당업체가 고용하고 직접 인건비를 지급한 인력만 해당